

보도시점 2023. 12. 30.(토) 조간 배포 2023. 12. 29.(금) 09:00

「금융위원회 정책 돋보기⑨」

청년도약계좌 운영 현황 및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 안내

- '23.6~12월중 **136.9만명 신청**(재신청 제외) ⇒ '23.7월~12.27일 **51.0만명 계좌개설**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가입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판단,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
 - 12월 가입신청 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의 계좌개설 및 1월 가입신청(신규·재신청)은 '24.1.2~12일중 가능(영업일만 운영)

1. '23년 청년도약계좌 운영 현황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협약은행*과 함께 **국정과제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여 운영중이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2월에는 9.1만명이 가입을 신청(11월 7.5만명 대비 증가)하고, 3.2만명이 계좌를 개설*하였다.

- * 12.27일까지 기준
- * 11월 가입신청자 또는 12월 가입신청자 중 1인가구 청년이면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어 계좌를 개설한 청년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후 6~12월중 **누적 136.9만명**(재신청자 제외)**이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12.27일까지 **누적 51.0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였다.

11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5만원으로 월 납입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1만원(최대 2.4만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청년은 10월말 기준 누적 2.3만명이다. 청년 도약계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취급은행은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 등이 발생하더라도 중도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 *** 취급은행별 담보부대출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 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중

2. '24년 청년도약계좌 운영 계획

'23.12월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24.1.2일부터 1.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영업일만 운영).

1월 가입신청 기간은 1.2일부터 12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처음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청하였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1.18일부터 2.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29일부터 2.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영업일만 운영).

3.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

「조세특례제한법」개정('24.1.1일 시행)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계좌개설)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23년중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및 '22년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일시적 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별도 안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협약은행과 함께 '24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예정이며, 청년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관계부처·기관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 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 '3' 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치연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김이재	(02-2100-1686)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책임자	본부장	김진휘	(02-2128-8080)
		담당자	부장	이윤경	(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	책임자	본부장	이인균	(02-3705-5184)
		담당자	부장	이종혁	(02-3705-5326)





붙임

2024년 1월 운영 일정

* 일정은 관계기관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예정(https://www.kinfa.or.kr))

		가입	신청	요건확인	계좌가	l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3.12/31	1/1	1/2	1/3	1/4	1/5	1/6	
		12월 가입신					
1/7	1/8	1/9	1/10	1/11	1/12	1/13	
	1월 가입신청						
	12월 가입신청 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전원) 계좌개설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월 가입신청자 가입요건 확인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월 가입신청자 가입요건 확인						
	1월 가입신청 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1인 가구) 계좌개설						
1/28	1/29	1/30	1/31	2/1	2/2	2/3	
	1월 가입신청 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전원) 계좌개설						
2/4	2/5	2/6	2/7	2/8	2/9	2/10	
	1월 가입신청 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전원) 계좌개설						